

# 정기예금 약관

## 제1조 약관의 적용 범위

이 약관은 거래처와 홍콩상하이은행 (이하 “은행”)과의 자유 정기예금 거래 (이하 “예금”)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 예금약관의 내용을 적용한다.

## 제2조 지급 시기

이 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종료 후 예금주가 청구한 때 지급한다.

## 제3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원화 1백만원으로 한다.

## 제4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기업고객으로 한다.

##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최저 1개월 이상 최고 60개월 이내에서 월단위 또는 일단위로 은행과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예금 가입일 기준으로 월별 혹은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

- 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50%
- 만기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20%
- 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구간 :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

## 제7조 중도해지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 당시의 약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비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다만, 예금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경과 후 중도해지 시,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한다.

#### 제8조 기한 갱신

이 예금을 만기일 이전 또는 거치기간 종료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갱신하는 경우(이하 “기한갱신”이라 함)는 제 7조에 불구하고 예금일로부터 기한 갱신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기한 갱신한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 이자는 갱신전의 예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7조에 따라 처리한다.